

세무안내 taxation business

2002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안내

매년 1월은 근로소득세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달입니다.

이번 호에서는 각 회사의 연말정산업무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난 해와 달라진 세법 규정과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을 안내하고, 다음에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와 알아두면 유익한 사례 등을 제공하겠습니다.

자료제공 및 문의 _____
국세청 납세홍보과(02-397-1397)
E-mail : ho25400@nts.go.kr

■ 소득세율 인하

2001년		
과제표준금액	세율	누진공제
1천만원 이하	10%	
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	20%	100만원
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	30%	500만원
8천만원 초과	40%	1,300만원

2002년		
과제표준금액	세율	누진공제
1천만원 이하	9%	
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	18%	90만원
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	27%	450만원
8천만원 초과	36%	1,170만원

■ 근로소득공제 확대

2001년		
총 급여액	근로소득공제금액	
500만원 이하	전 액	
500만원 초과	500만원 + 500만원 초과 1,500만원 이하 금액의 40%	
1,500만원 초과	900만원 + 1,500만원 초과 4,500만원 이하 과금액의 10%	
4,500만원 초과	1,200만원 + 4,500만원 초과금액의 5%	

2002년		
총 급여액	근로소득공제금액	
500만원 이하	전 액	
500만원 초과	500만원 + 500만원 초과 1,500만원 이하 초과금액의 45%	
1,500만원 초과	950만원 + 1,500만원 초과 3,000만원 이하 초과금액의 15%	
3,000만원 초과	1,175만원 + 3,000만원 초과금액의 10%	
4,500만원 초과	1,325만원 + 4,500만원 초과금액의 5%	

■ 경로우대·장애인 공제 확대

2001년	2002년
·장애인·경로우대자 에 대한 추가공제	
- 대상자 : 장애인 및 65세이상 부양기족	공제액 : 연 100만원
- 공제액 : 연 50만원	

■ 보장성보험료 공제대상 확대

2001년	2002년
·보장성 보험료 공제대상 - 생명·상해보험 - 순해보험 - 농 협·수 협·신 협·새마을금고법 에 의한 공제	「교원·군인·경찰·소방·지방행정공제회의 보장성공제」도 공제대상에 포함

■ 의료비 공제대상 확대

2001년	2002년
·공제대상 의료비 - 진찰, 치료 등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- 약사법에 의한 의약 품 구입비용 - 장애인의 보장구 구입비용	시력 보정용 안경(콘택트렌즈 포함) 및 보청기 구입비용도 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에 포함 ※ 단, 안경·콘택트렌즈의 경우 본인 및 부양기족 1인당 연간 50만원 한도

■ 대학생 교육비 공제대상 교육기관 확대

2001년	2002년
·공제대상 교육기관 -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(전문대학, 방송통신대학, 신학대학 등 포함)	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일명 "사이버 대학"을 공제 대상 교육기관에 추가하여 원격대학생 교육비 공제 가능

■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제도 신설

2001년	2002년
(신설)	· 장애인 특수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- 공제대상 교육기관 : 사회복지시설 및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재활교육 실시기관으로 인정받은 비영리 법인(국외 교육기관 포함) - 공제한도 : 1인당 연 150만원

■ 연금보험료공제 확대

2001년	2002년
·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(사업자부담금 제외) 및 공무원·군인·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납부액의 50%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	납부액의 100%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

■ 근로소득세공제 한도 및 대상 조정

2001년	2002년
·근로소득세액 공제	
-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⇒ 45%	
- 산출세액 50만원 초과 ⇒ 22만5천원 +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%	- 공제율 ⇒ "좌동"
- 공제한도 ⇒ 60만원	- 공제한도 ⇒ 40만원
- 근로소득에서 인정상여를 차감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적용	- 인정상여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세액공제 적용

■ 기부금의 범위 조정

2001년	2002년
·사립학교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 중 - 시설비·교육비·연구비 ⇒ 근로소득 금액에 전액 소득 공제	·사립학교 등에 지출하는 시설비·교육비·연구비 외에 장학금에 대하여도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 소득공제
- 장학금 ⇒ 근로소득 금액의 10% 범위내에서 소득공제	- 근로소득 금액의 10% 범위내에서 공제되는 저정기부금의 범위에 우리사주 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추가